

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병주의원 · 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7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5.

발 의 자 : 김병주 · 유용원 · 어기구
박용갑 · 허성무 · 김성희
김태선 · 이언주 · 황명선
김소희 · 이달희 · 강준현
김상훈 · 민병덕 · 김예지
김태호 · 유영하 · 김의겸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, 장기 · 대형 계약 등 방위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무역보험이 없고, 수출입은행의 대출제도와 연계가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방산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여 그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,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연계 ·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 무역

보험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8조 등).

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단서 중 “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(中長期延拂)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”을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”으로, “따로”를 “각각 따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(中長期延拂)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(제2호에 해당하는 무역보험은 제외한다)
 2. 「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 분야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
- 제1장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4(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 지원) 공사는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과 연계·협력할 수 있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계약체결 한도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(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·소재실패정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한도를 정한다. 다만,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(中長期延拂)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.	제8조(계약체결 한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각</u> <u>따로</u> -----.
<신 설>	1. <u>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(中長期延拂)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(제2호에 해당하는 무역보험은 제외한다)</u>
<신 설>	2. 「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 분야 수출

②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<u>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<u>제8조의4(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 지원) 공사는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과 연계·협력할 수 있다.</u>
---	---